

한의학교육실 운영 규정

제정 2021. 07. 15.

제1차 개정 2024. 11. 20.

제1조(총칙)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7조(단과대학) 제4항의 한의학교육실(이하 “교육실” 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① 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한의학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
2.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개발, 개편, 운영 및 평가(개정 2024.11.20.)
3. 강의계획과 신교육기법, 교수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
4. 한의과대학 재학생에 대한 학습법 프로그램 운영
5. 기초종합시험, 임상종합시험, 임상술기평가(OSCE, CPX 등)의 시행
6. 졸업역량 평가결과의 분석 및 피드백
7. 한의과대학의 CBT(Computer Based Test, 이하 “CBT” 라 함)시행 및 운영체제 관리
8.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9. 한의과대학 사명, 졸업성과, 핵심역량의 홍보(신설 2024.11.20.)
10. 한의과대학 교육프로그램 평가 및 관련 업무(신설 2024.11.20.)
11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(개정 2024.11.20.)

제3조(조직) ① 교육실의 실장(이하 “교육실장” 이라 한다)은 한의과대학 소속 일반교원으로서 **한의과대학장**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24.11.20.)

② 교육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교육실에는 필요에 따라 산하에 부서를 둘 수 있다.

④ 교육실에는 한의학 교육과정의 수립, 운영, 평가와 교수법, 학습법을 전담하는 교육학 전공자인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⑤ 교육실에는 CBT운영체제 관리를 위해 유관 전공자를 직원으로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교육실의 **운영 및 업무 수행**을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(개정 2024.11.20.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교육실장으로 하고, 위원은 한의학과장, 한의예과장, 한방병원 교육연구부장을 당연직으로 교육실장이 추천하여 한

의과대학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4.11.20.)

-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(개정 2024.11.20.)
 - 1. 제2조의 교육실 업무에 관한 사항(개정 2024.11.20.)
 - 2. 교육실 운영 규정이 제·개정에 관한 사항(개정 2024.11.20.)
 - 3.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(개정 2024.11.20.)
 - 4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(개정 2024.11.20.)
 - 5. 삭제 (2024.11.20.)
 - 6. 삭제 (2024.11.20.)
 - 7. 삭제 (2024.11.20.)
 - 8. 삭제 (2024.11.20.)
 - 9. 삭제 (2024.11.20.)
 - 10. 삭제 (2024.11.20.)

제5조(예산) 교육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준용하도록 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411, 2021.07.15)

이 규정은 2021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476, 2024.11.20)

이 규정은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.